

# 교원인사위원회규정

제정 2008.09.01	1차 개정 2012.02.10
2차 개정 2012.07.22	3차 개정 2019.08.26
4차 개정 2022.02.28	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우송학원 정관 제48조에 의거 우송정보대학 교원인사위원회(이사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 및 직무)** ①위원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6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보직교수 중 임명하며,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기능 및 심의)**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총장이 교수, 부교수, 조교수의 임용 제청 또는 강사와 비전임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<개정2019.08.26.>

2. 총장이 부총장 등의 주요 보직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8.26., 2022.2.28.>

3.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

2. 학생의 교수·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

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
**제5조(회의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관계자의 회의참석)** 총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, 또한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**제7조(간사)**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8조(회의록)** ①위원회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**제9조(기타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